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34
----------	-------

발의연월일 : 2026. 10. 1.

발 의 자 : 정태호 · 맹성규 · 박민규
최기상 · 박상혁 · 황명선
이정헌 · 허 영 · 진성준
강경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재정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속도로, 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기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런데 민간투자제도가 1994년 도입된 이후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이 증가하고 내구연한 경과로 증설·개량 등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전제로 추진되어 건설 이후 증설·개량·단순 운영에 대한 별도의 민간투자방식이 없는데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이에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재정 부담의 완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증설·개량·단순

운영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의 증설·개량과 동시에 증설·개량 부분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되, 증설·개량의 대가로, 또는 증설·개량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전체 시설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6.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의 증설·개량과 동시에 증설·개량 부분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되, 증설·개량의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전체 시설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7.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의 증설·개량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불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설에 대해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제7조의2제1항 중 “제4조제2호”를 “제4조제2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사업(제4조제7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축조하기”를 “축조·증설·개량·운영하기”로 한다.

제24조 중 “구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을 “구성된 토지 또는 설치·증설·개량된 사회기반시설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되는 사회기반시설(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준공 후”를 “준공 후 또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개시일 도래 후”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제4조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로, “받은”을 “받거나 제4조제7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실시협약상 운영개시일이 도래한”으로 한다.

제4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개시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운영을 해태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 -----. 1. ~ 4. (현행과 같음) <u>5.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의 증설</u> <u>· 개량과 동시에 증설· 개량</u> <u>부분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u> <u>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되, 증</u> <u>설· 개량의 대가로, 또는 증</u> <u>설· 개량과 국가 또는 지방자</u> <u>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비용을 지불하는 대가로</u> <u>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전</u> <u>체 시설의 시설관리운영권을</u> <u>인정하는 방식</u> <u>6.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의 증설</u> <u>· 개량과 동시에 증설· 개량</u> <u>부분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u> <u>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되, 증</u> <u>설· 개량의 대가로 사업시행</u> <u>자에게 일정기간 전체 시설의</u> <u>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u>
<u><신 설></u>	

<신 설>

5. · 6. (생략)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 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7.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의 증설

· 개량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불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설에 대해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8. · 9.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
액등 국회 의결) ① -----
-----제4조제2호
및 제6호-----

⑤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⑤ -----

----- 축조 · 증설

· 개량 · 운영하기-----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민간투자사업으로 구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

-----.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구성된 토지 또는 설치·증설·개량된 사회기반시설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되는 사회기반시설(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

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

-----준공 후 또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개시일 도래 후-----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제4조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

-----받거나 제4조제7호에

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
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
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
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기반시설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 설>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
업의 실시협약상 운영개시일이
도래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
분) -----

1. ~ 4. (현행과 같음)

5.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개시일 이후 정당한

	<u>사유 없이 운영을 시작하지</u> <u>아니하거나 운영을 해태 또는</u> <u>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u> <u>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	--